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0가단5175915 판결 [부당이득금 등 반환청구]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최진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수진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민경

변론 종결2023. 6. 23.

판결 선고2023. 8.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2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2023.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927,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무선 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개발, 콘텐츠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반주기 및 음향기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렌탈 노래반주기 관리 약정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일자불상경부터 노래방 반주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와 협력하여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노래방 업소에 노래반주기를 대여하게 하고 그 대여의 대가인 렌탈료는 D가 부담하는 대신 노래방 기기의 화면에 광고를 표출시키는 F라는 명칭의 광고매체사업을 진행하였다.

2) D는 2013. 7. 17. 피고와 사이에 위 노래방 업소에 대여하여 설치된 G 광고전용 노래반주기에 상업광고가 표출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노래반주기의 공급과 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고, 그 대신 피고에게 매월 온라인 신곡 인증을 위한 토큰을 지급하고 반주기 1대당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렌탈 노래반주기 관리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D의 영업 양도·양수

D는 2014. 7. 31. 원고와 사이에 D가 주식회사 E과 진행하여온 위 F 광고매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권 및 관련 콘텐츠 등에 관한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가 부담하던 노래방업소 운영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노래반주기 렌탈료 채무 등을 인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노래반주기 관리 약정

1) 원고는 2014. 8. 6. 전항의 영업 양수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양도인인 D가 피고와 체결했던 나. 2)항의 렌탈 노래반주기 관리 약정을 기초로 하면서도 계약기간을 2014. 7. 13.부터 3년간이

아니라 2014. 8. 6.부터 3년간으로 하고, 관리 업무의 수행 대가로 노래반주기 1대당 지급하는 수당을 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등 수정과 변경을 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반주기 관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반주기 관리자인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계약서 제3조에 명기한 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공급과 관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관리하는 업소에 '갑'이 본 계약의 물품을 대여 공급함에 있어 대여 계약 기간 중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필요 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성립]

'을'이 관리하는 업소에 제3조에 명기된 물품을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물품 범위]

본 계약의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 품목 : 광고전용 노래반주기

②품명 : G

제4조 [설치장소]

1. 본 계약의 물품 설치 장소 및 수량은 별첨하여 본 계약 후 첨부하도록 한다.
2. 계약기간 중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별첨된 설치 장소 및 수량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업소 영업 상황 변동시 을은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여기서 영업상황이라 함은 영업정지, 취소 등 해당 업소의 영리 행위의 변동이 있을 시를 말한다)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총 3년(36개월)으로 '을'이 관리하는 업소에 갑의 물품이 설치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갑과 을이 별도의 의사를 표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6조 [업소 관리권의 보장]

'갑'은 계약기간 동안 해당업소의 관리권한을 '을'에게 보장한다. 단, 업소주의 재량권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신곡인증 및 관리비]

갑은 물품의 광고표출 및 매월 신곡 업데이트를 위하여 을에게 온라인 신곡 인증용 토큰을 제공한다.

제8조(물품의 관리 및 수당 지급)

1. 을은 제7조의 신곡인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의 온라인 연결을 의무화하며, 만약 온라인 연결이 안 된 업소의 경우 매월 1일 전후하여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신곡 및 광고 영상의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항의 관리 업무의 수행 대가로 물품의 한 대당 9,000원(부가세 별도)의 수당을 을에게 매월 말일 지급하며, 을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월 25일 이전 갑에 제출한다.

제9조 [광고표출의무]

'을'은 해당물품에서 표출되는 '갑'의 상업광고를 업소 영업시간 중 표출토록 반주기 설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물품의 설치 운영되는 개별 룸에 고객 입장시 물품의 전원을 'ON' 상태로 켜두어 '갑'의 상업광고가 반주기 대기모드에서도 상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1조 [물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② '을'이 관리하는 업소의 이전, 명의 변경 및 매매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을 타인에게 승계 또는 이관하거나 제품의 설치 장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표 기재 각 업소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2014. 8.부터 2017.

1.경까지 신곡 인증용 토큰(1대당 9,900원, 이하 '토큰')을 제공하다가 2017. 2.경부터 토큰의 지급을 중단하였고, 2014. 8.부터 2016. 7.까지 1대당 9,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용역비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6. 8.경부터 용역비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마. 이 사건 약정의 종료

원고는 2017. 4. 18.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은 위 약정 제5조에 따라 2017. 8. 5.경 만료되었다.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비 지급청구소송과 판결

1) 피고는 2017. 5.경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별지 목록 표 기재 각 업소에 대한 2016. 8.경부터 2017. 7.경까지의 용역비 및 토큰 등 합계 60,855,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17가합566490).

2)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2018나2058807)은 2019. 11. 29. 피고가 청구한 용역비 중 별지 목록 표 기재 각 업소에 대한 2016. 8.이후부터 2017. 7.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의 관리가 입증된 업소들1)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등 합계 39,075,300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다만, 원고가 기지급한 용역비 및 토큰에 피고가 관리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P에 대한 2016. 10.부터 2017. 1.경까지의 토큰, Q에 대한 2017. 1.분에 관한 토큰, R에 대한 2014. 8.부터 2017. 1.까지의 용역비 내지 토큰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합계 14,087,700원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와 이를 전제로 한 상계주장을 인정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24,987,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원심 일부취소 판결(이하 '관련 선행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 선행사건 판결에서는 S, T, U, V 등 4개 업소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는 착오로 이들 업소 외의 P, Q, R의 일정기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금의 상계를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았으나, 피고가 아래 표 각 기간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수령한 S, T, U, V의 관리용역비와 토큰비 상당액도 피고가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대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한 부당이득금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용역비 부당이득의 총액은 아래와 같이 28,927,800원이다.

S	14	2015. 1.~2015. 6. (6개월)	2015. 1.~2015. 6. (6개월)	831,600	831,600	1,663,200
T	11	2014. 8.~2016. 7.	2014. 8.~2017. 1. (30개월)	2,613,600	3,267,000	5,880,600

S	14	2015. 1.~2015. 6. (6개월)	2015. 1.~2015. 6. (6개월)	831,600	831,600	1,663,200
		(24개월)				
U	19	2014. 8.~2016. 7. (24개월)	2014. 8.~2017. 1. (30개월)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는 "(29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4,514,400	5,643,000	10,157,400
V	21	2014. 8.~2016. 7. (24개월)	2014. 8.~2017. 1. (30개월)	4,989,600	6,237,000	11,226,600
합계	28,927,800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S 및 U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S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2015. 1.부터 2015. 6.까지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② U는 2014. 8.부터 2014. 9.까지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마포구청 위생과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위 업소가 수년간 휴업하여 단전단수된 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입주민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음)하여 2016. 12. 31.자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가 유예기간을 거쳐 2019. 6. 17. 영업허가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S 및 U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휴업한 기간 동안 노래방 영업에 사용되는 반주기가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대한 반주기 신곡 및 광고영상 업데이트 등 피고의 관리업무가 수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관리업무의 대가로서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S에 대한 2015. 1.부터 2015. 6.까지의, U에 대한 2014. 8.부터 2017. 1.까지의 각 용역비 내지 토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T 및 V 청구 부분에 관하여 그러나 노원구청 위생과에 대한 2023. 5. 16.자 사실조회신청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V은 사업장 소재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2016. 11. 8.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위 업소의 사업자 변경 등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 T에 대하여는 강남구청 위생과에 휴폐업 및 행정처분 상황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보내고 이 법원이 사실조회 회신을 독촉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회신이 오지 않은 사실⁵⁾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T 및 V의 관리업무 부재 주장에 관하여 보면, ① V의 사업자가 계약기간 도중 변경되었고 이 사건 각 관리약정 제11조 제2항은 '피고가 관리하는 업소의 이전, 명의 변경 및 매매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을 타인에게 승계 또는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약정의 목적과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통보의무는 이 사건 약정상의 부수적인 의무로 보이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반주기 신곡 및 광고영상 업데이트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비와 토큰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T의 휴폐업 및 행정처분 상황에 대하여 강남구청 위생과 신청을 하였으나 끝내 회신이 오지 않아 T이 앞서 본 표 기간 동안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관련 선행소송에서 위 각 업소의 관리사실을 업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관련 선행 소송에서 피고가 관리비를 청구한 대상 기간은 2016. 8.부터이고, 신곡인증용 토큰의 지급을 청구한 대상 기간은 2017. 2.부터로서 이 사건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 기간과는 겹치지 아니하여 관련 선행소송에서의 관리사실 입증이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당이득 청구의 근거로서 삼고 있는 그 이전의 관리 기간 동안에 피고의 관리가 없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되지는 아니하는 점, ④ 한편 노래방 영업에서 신곡의 업데이트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위 기간 동안에도 영업을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관리업무의 일환으로서 수행하는 신곡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광고영상도 실행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피고가 위 영업을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반주기 관리약정상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S 영업과 관련하여 2015. 1.부터 2015. 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용역비 및 토큰비 합계 1,663,200원, U 영업과 관련하여 2014. 8.부터 2017.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용역비 내지 토큰비 10,157,400원을 합한 11,82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U에 대하여 2016. 8.부터 2016. 12.까지, V에 대하여 2016. 8.부터 2017. 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용역비 1,999,800원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용역비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선행사건 판결에서 별지 목록 표 기재 각 업소 중 H(48대), I(70대), J(8대), K(33대), L(5대), M(58대), N(10대), O(68대)에 대하여만 피고가 2016. 8.부터 2017. 7.까지 해당 업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반주기의 신곡인증 및 광고영상 업데이트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업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소들의 경우 해당 업소들에 원고가 공급한 반주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위 기간 동안 해당 반주기들을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U 및 V에 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용역비지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예비적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1,820,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7.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정윤

별지

- 1) H(48대), I(70대), J(8대), K(33대), L(5대), M(58대), N(10대), O(68대)
- 2) 각 업소별 "설치대수 × 용역미제공기간 × 9,900원"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 3) 각 업소별 "설치대수 × 토큰부당수취기간 × 9,900원"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는 "(29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키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5) 당초 원고가 제출한 강남구청 위생과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및 2022. 9. 22.자 사실조회신청서에 T에 대한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W'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강남구청에서 위 주소지에 'T'이라는 업소가 영업신고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이 온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다시 T의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X'라고 기재하여 동일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독촉도 하였으나 결국 그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이다.